

2023년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

□ 큰 거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-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

□ 감사개요

- 감사자 : 울산광역시
- 감사범위 : 최근 2년간('21. 7. 1. ~ '23. 7. 31.)기구 및 정원 운영현황
- 중점점검사항
 - 기구정원규정 준수여부
 - 기준인건비 현황 및 기준인력 정원 반영 현황
 - 인력재배치 목표(1%) 달성 여부 확인 등

□ 감사결과 : 개선권고

- 제목 : 기능·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효율화 도모 노력 미흡
- 내용 :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효율화(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)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 쇠퇴분야 인력을 감축하고,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·활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.

< 기능·인력 재배치 기준 >

- ① (기능) 지원기능, 쇠퇴기능에서 **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***으로 재배치
* 예시 : 도시개발·산단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, 지역별 특화 역점과제·국제행사 등 지역현안 분야, 주요 국정과제 또는 법령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 분야
- ② (현장) 본청 또는 감독부서에서 **읍면동, 일선 서비스 현장**으로 재배치
- ③ (서비스 편차) 인력 부족으로 안전·복지 등 **행정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**되어있는 **현업부서 또는 읍면동****으로 재배치
**읍면동간 업무량 편차에 따른 인력 재배치의 경우 동일한 기능간 이동이라도 실적인정
- ④ (근로시간) 공직내 **장시간 근로환경 개선**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**적정 배치**

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에 따라, 공무원 정원의 1% 이상('21년 0.7% 이상, '22년 1.0% 이상)을 감축 후, 신규 행정수요 및 현장 서비스 분야등에 재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, 아래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감축 목표치 미만 실적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.

< 기능·인력 재배치 미흡 사례 >

지자체명	재배치 달성률(%)		비고
	'21년	'22년	
울산 북구	0.9	0.1	2022년도 목표치 미만